

경상북도 공고 제2025 - 1853호

「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4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
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-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대상자의 근로기간 요건을 변경하여 장기 근무자 우대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 도모하고자 함.
- 다자녀 가구 기준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초대형 산불 등 재난에 따른 피해 근로자의 지원 체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추천 및 신청대상 재직기간 변경(안 제6조)

- 공고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재직자로 변경

나. 지원대상자 선정의 우선 지원대상자 변경(안 제8조)

-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인한 관련 조항 삭제
- 산불 등 각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

## 3. 개정규칙안: 붙임

## 4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(담당부서: 경제정책노동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이메일, 방문 등

라. 보내실곳

- 주 소: 우)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
경제정책노동과(노사정책팀)
- 연락처: Tel 054-880-2688, Fax 054-880-2769 이메일: [helo777@korea.kr](mailto:helo777@korea.kr)

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 
일부개정규칙안

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개월”을 “12개월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우선적”을 “우선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산불, 태풍, 홍수 등 각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근로자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추천 및 신청대상)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고,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(공고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<u>3개월 이상 재직자를 말한다</u>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 또는 신청대상이 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(지원대상자 선정) 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 다음 각 호의 경우는 <u>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선정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다자녀(3명 이상)의 부모인 근로자</u></p>	<p>제6조(추천 및 신청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2개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지원대상자 선정)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<u>우선적</u>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산불, 태풍, 홍수 등 각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근로자</u></p>

## 관련 법령 발췌

###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1조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·금융상·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○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자녀 가구”란 경상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. 이 경우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